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9월 5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9.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임.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조항 중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안 제1조)

○ 정의조항 중 불필요한 사항 삭제 및 정비(안 제2조)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4조)
- 주민안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5조 ~ 제7조 및 제9조)
- 준용조항을 삭제(현행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이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경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조례 제5조(주민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및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보험가입)를 삭제함. 주민안전지원센터는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된 바 없으며 그 기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의 치안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자율방범대의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의 제정 당시부터 타 조례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관련부서 및 안전심사를 담당했던 일부 위원들로부터 반대가 있었던 조례로 「경찰법」 전부개정(2021.1.1.)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소관사무에 해당하며, 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실정임.
 -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을 고려해 봤을 때, 자치경찰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근 무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가중되는 주민의 불안감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
----------	-----

발의연월일: 2023. 9. .

발의자: 이규선, 신흥식, 임현호
이순우, 양송이, 우경란
의원(6인)

1. 제안이유

- 가.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13일 제정·시행되었음.
- 나. 하지만 본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 중 실정에 맞지 아니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정의조항 중 “범죄행위”, “방범 취약계층”, “단체”, “사업” 등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설명이 필요한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주민안전”은 더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조)
- 다. 범죄로부터 주민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신설)
- 라. 주민안전지원센터는 근거가 모호하고 실제 전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삭제)
- 마.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므로 불필요한 준용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함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9. 4. ~ 9.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안전”이란 범죄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정부,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
 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
 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